

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. 11. 19 선고 2024가단1574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주식회사 B

변론 종결2024. 11. 12.

판결 선고2024. 11. 1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9. 7. 20. 접수 제5395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권희

별지